

인천지방법원 2024. 5. 30 선고 2023가단13892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 담당변호사 황용해

변 론 종 결 2024. 5. 2.

판 결 선 고 2024. 5. 30.

주 문

-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서구 C 대 80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고 한다) 중 107322795138/110205291420600 지분(이하 ‘이 사건 지분’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6. 3. 28. 접수 제523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 피고는 원고에게 2015. 2. 13.부터 이 사건 지분에 대한 피고의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연 1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 요지

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를 포함하여 D아파트재건축조합(이하 '이 사건 조합'이라고 한다) 외 165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, 이에 원고가 응소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였음에도 원고의 이 사건 지분이 피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이는 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. 또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및 부당이득 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한다.

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47936호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이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, 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21. 12. 28.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청구를 한 사실, 위 소송 중 2015. 2. 12. 피고는 원고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포기조서가 작성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.

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오히려, 갑 제1호증, 을 제1, 2,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, 즉 ① 원고는 최초 이 사건 지분1)의 소유권자였던 사실, ②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은 2004. 5. 8.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4. 5. 10.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한 사실, ③ 이 사건 조합은 2007. 10. 4.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7비합40호로 신탁재산의 고유재산전환허가신청을 받아 이 사건 지분의 신탁등기를 말소한 사실,

④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위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47936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2016. 3. 28.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,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,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자라고 보기는 어렵다.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승엽

1) 등기부상 50.089/51434.3 지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(을 제2호증), 이 사건 지분과 동일하다.